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법」에서 위임하는 연안체험활동 및 안전교육, 민간 연안순찰요원에 관한 내용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형 연안 체험활동 정의의 선박, 기구의 범위를 「선박법」의 선박, 「어선법」의 어선,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기구로 개정(제2조1호)

나.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안전관리요원 법정 안전교육 수수료를 7,500원에서 8,000원으로 현실화(제6조의2)

다.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기간별 신고서 제출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운영자의 원활한 업무편의를 도모(제7조1항, 2항, 별지 제2호의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라. 민간 연안순찰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제11조4항 3호)

마. 안전관리 요원이 이수해야 되는 교육을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체험활동 교육에서 통합형 체험활동 교육을 추가하여 교육의 편의 증진(별표2, 별지 제1호의 서식)

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채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인적 저변확대 도모(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과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선박·기구 등을”을 “「선박법」의 선박, 「어선법」의 어선,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를”로 한다.

제6조의2 중 “7500원”을 “8000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중 “14일”을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장 및 장비”를 “복장, 장비 및 경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단체상해보험료 등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별표 2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통합형(수중·수상) 체험활동	수상·수중 안전 수칙	8시간
	관련 법령 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별표 3 제1호나목 중 “인명구조요원”을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의 관한 법률」 제30조2에 따른 수상구조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분 중 “일반형”을 “통합형”으로, 같은 구분 중 “수중형”을 “수중형, 통합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14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14일”을 “7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 ----- ----- ----- -----.
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1. ----- 「선박법」의 선박, 「어선법」의 어선,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기구를 ----- --.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안전교육 수수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u>7500원</u>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안전교육 수수료) ---- ----- ----- ---- <u>8000원</u> ----- -----.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① ----- -----

7월

1. ~ 4. (현행과 같음)

②

7일

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현장체험활동 건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1조(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 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 ~ ③ (생략)

④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연안순찰요원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신 설>

⑤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 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복장, 장비 및 경비 등을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단체상해보험료 등 운영과 활동에 관한 경비

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제6조제2항 관련)

교 육 구 분	교 육 내 용	교 육 시 간
가. 수상형 체험활동	수상안전 수칙	6시간
	관련 법령 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나. 수중형 체험활동	수중안전 수칙	6시간
	관련 법령 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다. 일반형 체험활동	관련 법령 등	4시간
	응급처치술	
	인명구조	
라. 통합형(수상·수중) 체험활동	수상·수중 안전 수칙	8시간
	관련 법령 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비 고

1.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2. 안전교육은 연안체험활동 신규 종사일 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이직 등으로 연안체험활동에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종사자로 보아 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4. 통합형(수상·수중) 체험활동 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 가. 일반형 체험활동: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나. 수상형 체험활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자
- 다. 수중형 체험활동: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

- 가. 수상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이 경우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 나. 수중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8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이 경우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 다. 일반형 체험활동: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할 것

3. 안전장비의 종류 및 배치기준

가. 수상형 체험활동

- 1) 비상구조선(무동력 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탑승정원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추는 것
- 2) 구명조끼(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는 것. 이 경우 전체 구명조끼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 3)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

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4)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5)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출 것

나. 수중형 체험활동

1) 비상구조선: 탑승정원이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2) 구명조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출 것. 이 경우 전체 구명조끼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3)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4)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5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5)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출 것

다. 일반형 체험활동

1) 구명튜브: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2) 구명줄: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3) 구급장비: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출 것

비 고

1. 안전장비는 연안체험활동 중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선박에 승선하여 연안체험활동을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을 비상구조선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3호나목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제3호가목2) 후단 및 나목2) 후단의 소아용 구명조끼 수를 계산하는 경우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계산결과가 1 미만인 경우는 1로 본다.

안전교육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교육구분	통합형 [], 수상형 [], 수중형 [], 일반형 []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안전관리요원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청장 또는 안전교육 수탁기관의 장 귀하

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운영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체험활동	유형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활동기간	부터 까지
	주요 내용	활동인원	
		활동장소	
		안전관리요원 인원	
		비상구조선 현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체험활동 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수수료 없음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 또는 보험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경사유서 및 관련서류 (변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해양경찰서)						신고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계획) 7일 (변경) 3일
운영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체험활동	유형	활동기간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부터 까지	
	주요 내용	활동인원	
		활동장소	
		안전관리요원 인원	
비상구조선 현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별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사유서 및 관련 서류 (변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 검토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인